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0. 9. 25
제 출 자 : 권 영 관 의원

1. 수정이유

- 자연학습원을 수탁할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- 관리 · 운영의 위탁 확대
 -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⇒ 공공기관 추가 (안 제12조 제1항)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다음
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 제1항중 “비영리법인”을 “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”
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2조 (관리 · 운영의 위탁)</p> <p>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·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 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학습원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 (관리 · 운영의 위탁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